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38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 강은미・류호정・박영순

배진교 · 심상정 · 양정숙

용혜인 • 이수진(비) • 이은주

장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 적용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 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그 원인은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의 제약 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을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변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대한 특례) ①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	
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u>다음</u>	<u>노무</u>
<u>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u> 사람	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u>아니하는</u>
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	
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	
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	<u><삭 제></u>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u>것</u>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	<u><삭 제></u>
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	2
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 자로 본다. <u>다만, 특수형태근로</u> <u>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u> 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 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생략)
-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 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 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 이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삭 제>

<삭 제>

<삭 제>

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⑧ ~ ① (생 략)

⑦
<u>변경</u>
<u>.</u>
⑧ ~ ① (현행과 같음)